

#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2001. 11. 26

제 출 자 : 고성군수

## 1, 개정사유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조항 및 규제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보관관리의 책임 변경 (안 제4조)
- 나. 대부절차 변경 (안 제5조)
- 다. 양도금지 삭제 (안 제8조)
- 라. 관리 및 감독 삭제 (안 제9조)
- 마. 반환 및 변상 변경 (안 제12조)

##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보조 및 지원)
- 지방규제개혁 정비사무
- 입법예고 : 결과 의견내용 없음

## 4, 본 문

- 덧붙임과 같음.

##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해당이장을 거쳐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조례 제11조제2항”을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u>읍면장 책임하에</u>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u>읍에는 건설계장이 회화면은 개발계장이 기타면에는 산업경제계장이 된다.</u></p>	<p>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u>읍면장 책임하에 본</u> 관관리 하여야 한다.</p>
<p>제5조(대부절차) 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u>대부신청(별지 제1호서식)을 해당이장을 거쳐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u></p> <p>②(생략)</p>	<p>제5조(대부절차) ①----- -----<u>(별지 서식)</u>-----<u>읍면장</u>----- -----</p> <p>②(현행과 같음)</p>
<p>제8조(양도금지) <u>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사람에게 인도하지 못한다.</u></p>	<p>제8조(양도금지) <u>(삭제)</u></p>
<p>제9조(관리 및 감독) ①<u>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u></p> <p>②<u>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u></p> <p>③<u>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u></p>	<p>제9조(관리 및 감독) ①<u>(삭제)</u></p> <p>②<u>(삭제)</u></p> <p>③<u>(삭제)</u></p>
<p>제12조(반환 및 변상) ①<u>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가 먼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u></p> <p>②(생략)</p>	<p>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 ----- -----<u>단서 삭제.</u> -----</p> <p>②(현행과 같음)</p>

양수기  
사용신청서  
원동기

품 명 :

사용목적 :

사 용 처 :

사 용 료 :

사용기간	자	년	월	일	시부터 (	시간)
	지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위의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읍 면장 귀하